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동 개정조례안은 2007. 8. 17.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 8. 2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자료대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회원증 재발급 및 반납 연체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강습·강좌 참여시 징수하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4호)
- 자료를 대출받은 후 반납기한을 연체하여 반납한 이용자로부터 권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 만큼 대출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2조2)
- 종전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특정한 사유(거주지 이전, 사고, 질병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반환을 해 주도록 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관련법률
 - 도서관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예산사항: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서관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서대출 카드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징수, 도서반납 연체에 대한 연체료부과,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등 도서관과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1조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도서관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변경한 것은 동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이 “제139조제2항”으로 수정 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것임.
- 안 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제1항의 내용에서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으로 수정한 것은 평생학습관의 자료 복사 및 출력 등의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며,
- 안 제2조제1항의제4호는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신규발급 대비 약 26%의 재발급 사유가 발생되어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현재 종이에 인쇄된 바코드를 코팅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자료자동대출반납시스템 시범설치를 위한 RF카드(RFID Tag)로 전환하거나 플라스틱카드를 도입할 경우 분실로 인한 재발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규가입자에게는 대출카드를 무료로 발급한 후 본인의 부주의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플라스틱카드형은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을, RF카드형은 성인 2,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초등학생 이하

1,000원을 부과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의2(연체료)를 신설하려는 것은 현행 대출시스템은 미회수 도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전화독촉, 이메일 발송, 문자전송, 독촉장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고, 자료를 연체한 일 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연체된 도서의 반납을 중용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한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 1일 책1권의 연체에 100원을 부과하도록 하되 연체료 부과 금액이 대출 자료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연체자에게는 연체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대출을 일시 정지 시키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로 인하여 도서대출의 미반납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서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의2는 현행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신설하여 거주지 이전이나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던 수강료 등의 반환이 본인의 의사변경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 수강료 반환 규정은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열악한 서비스 등으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도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없어 민원 발생 빈도가 높고, 수강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부분을 정리하고, 도서 반납 연체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도서대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던 평생학습관을 포함하고, 수강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동 조례는 도서관 및 평생교육원의 자료복사 및 출력료를 1매당 30원으로 정하는 등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요금 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므로 복사료 등 일반적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붙임 1]

2006년도 대출회원증 발급 현황

(단위: 건)

기관명	총회원수				신규발급				재발급			
	성인	청소년	어린이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계
고 덕	36,539	18,500	19,835	74,874	2,243	1,072	1,390	4,705	1,092	522	538	2,152
마 포	53,462	19,946	30,514	103,922	6,555	2,010	2,679	11,244	1,267	382	609	2,258
영등포	24,235	10,591	3,143	37,969	1,202	83	570	1,855	708	44	312	1,064
중 계	59,147	29,573	6,568	95,288	5,273	819	1,813	7,905	1,854	217	96	2,167
강 남	37,426	-	6,009	43,435	3,383	386	1,155	4,924	1,185	155	491	1,831
강 동	30,079	15,830	14,315	60,224	2,580	672	1,280	4,532	774	201	384	1,359
강 서	32,501	18,458	13,935	64,894	4,183	974	1,794	6,951	1,329	381	891	2,601
개 포	58,777	11,279	15,117	85,173	3,928	765	1,931	6,624	1,652	320	813	2,785
고 척	31,902	11,744	12,933	56,579	2,750	754	1,881	5,385	994	356	580	1,930
구 로	33,622	6,113	15,885	55,620	2,386	368	964	3,718	861	286	197	1,344
남 산	39,244	24,619	0	63,863	4,135	377	0	4,512	-	-	-	0
도 봉	50,310	9,231	20,204	79,745	4,000	552	1,576	6,128	2,186	510	477	3,173
동대문	66,608	10,414	7,194	84,216	3,507	706	1,005	5,218	911	207	94	1,212
동 작	29,691	19,794	23,447	72,932	3,197	2,132	2,055	7,384	913	609	610	2,132
서대문	40,739	13,478	9,975	64,192	4,411	473	1,317	6,201	2,184	492	395	3,071
송 파	136,724	19,518	16,257	172,499	9,405	1,218	2,726	13,349	3,504	454	1,016	4,974
양 천	91,530	16,946	25,296	133,772	7,275	1,710	2,914	11,899	728	86	313	1,127
어린이	34,243	4,624	24,362	63,229	8,480	342	10,299	19,121	105	15	132	252
용 산	20,543	2,252	5,346	28,141	2,257	222	1,065	3,544	355	117	167	639
정 독	73,413	12,971	6,710	93,094	6,958	633	708	8,299	684	721	84	1,489
중 로	23,511	2,028		25,539	3,832	692		4,524	689	124		813
계	1,004,246	277,909	277,045	1,559,200	91,940	16,960	39,122	148,022	23,975	6,199	8,199	38,373

[붙임 2]

2006년도 대출도서 반납 연체 현황

(단위 : 권)

기관명	대출권수 (2006)	3일 이내	4-7일	8-14일	15-30일	31-60일	61- 180일	181- 365일	365일 이상	계
고 덕	270,203	3,830	2,920	2,540	1,380	1,350	2,170	13	0	14,203
마 포	377,332	4,050	1,090	2,590	1,460	2,040	2,510	225	37	14,002
영등포	198,520	1,470	920	640	490	230	120	12	0	3,882
중 계	314,140	3,100	2,320	1,980	2,470	1,690	2,940	272	614	15,386
강 남	221,584	2,210	3,150	3,820	6,750	890	1,100	129	130	18,179
강 동	260,453	3,760	3,290	1,390	1,020	240	170	0	2	9,872
강 서	276,888	3,640	1,720	2,670	980	1,330	1,080	37	22	11,479
개 포	283,598	12,600	3,660	3,636	2,892	1,780	924	121	152	25,765
고 척	348,008	6,750	3,650	3,390	2,730	2,110	2,680	130	151	21,591
구 로	155,461	1,770	4,460	3,040	1,350	1,290	1,340	148	35	13,433
남 산	208,932	1,530	1,980	1,930	1,380	780	490	121	45	8,256
도 봉	341,291	5,700	2,330	2,440	1,680	850	1,260	80	400	14,740
동대문	243,237	3,000	1,900	1,210	1,470	1,870	2,460	209	522	12,641
동 작	331,770	3,020	3,200	2,550	1,670	500	1,170	132	123	12,365
서대문	261,626	3,700	1,640	1,340	1,740	870	1,350	111	57	10,808
송 파	468,961	4,970	5,040	3,710	2,630	1,220	950	32	58	18,610
양 천	458,053	7,090	5,020	3,710	2,310	680	4,370	410	74	23,664
어린이	610,150	4,010	3,640	1,880	1,530	1,040	1,480	56	247	13,883
용 산	236,950	2,270	1,620	1,280	1,310	1,710	1,200	114	108	9,612
정 독	273,348	2,880	4,830	3,930	3,290	2,650	2,940	140	225	20,885
중 로	129,897	1,700	1,860	950	540	130	110	19	36	5,345
계	6,270,402	83,050	60,240	50,626	41,072	25,250	32,814	2,511	3,038	298,601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붙임 3]

2006년도 대출도서 반납 연체자 관리비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전화료	문자전송	우편요금	방문회수	계	비고
고 덕		418	57		475	
마 포	34	878	21		933	
영등포	767	98	138		1,003	
중 계	77	629	35		741	
강 남	412	196	180		788	
강 동	176	867	21	80	1,144	
강 서	648	254	17		919	
개 포	4,428	194	270		4,892	
고 척	156	95	36		287	
구 로	647	37	46		730	
남 산	201	169	91	40	501	
도 봉	381	495	115	20	1,011	
동대문	220	809	240		1,269	
동 작	774	290	39	30	1,133	
서대문	1,185	194	146		1,525	
송 파	1,806	558	248	160	2,772	
양 천	1,280	686		400	2,366	
어린이		229	116		345	
용 산	566	633		140	1,339	
정 독	617	994	93		1,704	
중 로	136	141	8		285	
계	14,511	8,864	1,917	870	26,162	

(다음 페이지에 계속)